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15
----------	-------

발의연월일 : 2026. 4. 14.

발 의 자 : 김예지 · 서영석 · 박덕흠
강대식 · 김상훈 · 신성범
강경숙 · 최수진 · 김대식
송석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의 ‘2020~2021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은 17.7%로 비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 25.8%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치임.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의 구강건강 실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와 구강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에게 국민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도록 할 뿐 조사 실시 주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는 2005년, 2015년, 2025년 등 10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시의성 있는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조사 실시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도 국민 전체 구강건강실태조사와 맞추어 3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하고,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구강건강권 향상이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5조).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장애인의 구강건강상태에 대하여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다”를 “장애인의 구강건강상태를 따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홀로 사는 노인”을 “홀로 사는 노인 및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강건강상태조사 및 결과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구강건강상태를 조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